

## 산학협력(가족회사) 운영규정

1994. 03. 01. 최초제정	2020. 12. 01. 전면개정
2009. 08. 01. 부분개정	2024. 03. 01. 부분개정
2012. 08. 01. 부분개정	2025. 11. 21. 부분개정
2019. 08. 09. 부분개정	2026. 04. 01. 부분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산업체를 대상으로 가족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체결 범위)** ①산업체 등과 체결하는 산학협력 협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따른다.

②산업체와의 산학협력 협약은 대학과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산학협력단, 사업단(센터), 연구소 등도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와 협의 및 총장의 승인을 거쳐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약체결 결과는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가족회사”라 함은 대학과 산학 공동 기술개발, 기술·경영지도, 기술이전, 학생의 취업 및 현장실습, 장비·시설의 공동 활용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 등을 말한다.

②“산업체 등”이라 함은 병원, 기업, 연구소, 관공서 등 협력이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한다.

### 제2장 관리

**제4조(주관부서 및 업무)** 산학협력(가족회사) 협약체결에 관한 주관부서는 기획처로 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11.21.>

- ①가족회사의 가입신청접수, 승인, 탈퇴 등 산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 ②취업 및 창업, 현장실습 등 대학과 산업체 간의 인적 교류에 관한 사항
- ③산학협력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④기술혁신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 ⑤산학협력 교육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과정 자문 등에 관한 사항
- ⑥연구 장비, 연구 인력, 기업 지원 시설 활용에 관한 사항
- ⑦산업 분야(학과별) 산학협력 혁신위원회에 관한 사항
- ⑧기타 산학협력 및 대학 및 산업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약명칭)** ①대학과 산업체 간 또는 기타 기관 간에 체결하는 협약은 “산학 협력

협약”이라 한다.

②대학과 연구소 간에 체결하는 협약은 “연·학 협력 협약”, 대학과 관공서 간에 체결하는 협약은 “관·학 협력 협약”, 대학과 연구소, 관공서 및 기업 간 체결하는 협약은 “산·학·연·관 협력 협약”이라 칭한다.

③대학과 산업체 등의 협의에 따라 협약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협약신청)**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산업체 등은 산학협력(가족회사) 협약 체결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협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담당 부서(학과)에서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한다.<개정 2026.04.01.>

**제7조(협약승인)** 기획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산업체 등의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후 대학의 발전 및 학내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하고 가족회사와 협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한다.<개정 2025.11.21.>

**제8조(실무사항)** 기획처장은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한 제반 실무사항을 가족회사 등과 협의한다.<개정 2025.11.21.>

**제9조(협약당사자)** 협약은 총장과 산업체 등의 대표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학과 산업체 등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제반경비)** 협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대학과 산업체 등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협약서)** 협약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협약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제12조(협약내용)** 협약내용은 우수 인재 육성, 기술·경영지도 및 공동연구 등의 기술 교류와 정보 제공, 취업, 창업, 캡스톤 디자인, 현장실습, 애로 기술 해결, 공동기술 개발, 산학 네트워크 구축, 기업체 인사 초빙 및 기타 협력이 가능한 부분 등 상호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며 협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협약효력)** 협약은 대학과 산업체 등이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효하고 그 유효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만기일 6개월 이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으로 2년씩 그 효력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협약당사자 간에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협약해지)** 대학과 산업체 등이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활동 중지를 요청하거나 대학과 산업체 등이 활동과 실적이 저조하여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대학의 명예를 실추하여 더 이상 활동이 어려울 경우 가족회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대학과 산학협력 기업은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 제3장 지원 및 활동

**제16조(지원)** 대학과 산학협력 협약을 맺은 가족회사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①경영지원 : 기술교류회, 회사 홍보, 경영 컨설팅, 인적교류 등에 관한 사항
- ②기술지원 : 기술개발, 기술이전, 기술자문, 기술사업화 등에 관한 사항

- ③교육지원 : 산업체 재교육, 공용장비 교육, 세미나 및 특강 등에 관한 사항
- ④인적자원 : 취업, 창업, 현장실습, 캡스톤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
- ⑤기타 가족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등급관리)** 기획처는 가족회사의 산학협력 실적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관리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기획처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5.11.21.>

**제18조(가족회사 활동)** 산학협력 및 가족회사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지역사회협력센터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활동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5.11.21.>

- ①가족회사는 대학이 제공하는 산학협력 지원제도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가족회사는 대학에 가족회사 산학협력 기부금을 기탁할 수 있다.
- ③대학 및 가족회사는 상호 발전을 위한 활동을 계획 및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의2(유료 가족회사 제도)** ①가족회사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공유 협업 기반의 산학협력 지속 가능성과 자립화를 목적으로 유료 가족회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유료 가족회사 제도는 등급제로 운영하되 등급, 연회비, 지원 혜택 등은 유료 가족회사 운영 지침으로 정한다.

③연회비 수입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하고 산학협력 추진 및 운영에 활용한다.

[본조신설 2024.03.01.]

### 제4장 보칙

**제19조(정보보호)** 주관부서는 산학협력을 맺은 산업체 등과 관련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로 이를 관리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처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11.21.>

### 부 칙

- ①(시행일) 본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협약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 ①(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협약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시행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기관(회사)소개서

## 기 관 ( 회 사 ) 소 개 서

※ 기관(회사) 소개서는 자율양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별도의 소개 자료가 없을 시 본 서식 활용

### ■ 기관소개

※ 기관 소개(연혁, 보유 기술 등)

### ■ 주요제품 혹은 주요사업 분야

※ 주요제품에 대한 소개(사진, 회사 이미지 등)

※ 기관 소개서는 산학협력 가족회사 홈페이지 및 발간자료로 활용 가능

## 산학협력 협약서

대전보건대학교와 000(기관명)(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산학협력을 통한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반성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 본 협약은 양 기관이 대전보건대학교 가족회사로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맺고 상호교류 협력하며,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협력한다.

- 가. 산·학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 도모
- 나. 기술지도 사항 및 산학협력연구 과제 모색
- 다. 현장실습, 인턴십 등 산학협력교육의 활성화
- 라. 산업체의 우수인력 확보 및 졸업생들의 취업을 위한 상호협력
- 마. 산·학의 시설 및 기자재 공동 활용
- 바. 각종 교육 실시 및 교육과정의 공동 개발, 산업체 인사 대학교육 참여
- 사. 기타 산학협력 사항

제3조 양 기관은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성실히 수행하며,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통하여 수준 높은 사업결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4조 양 기관은 산학협력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상호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외부에 공개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서면승인 하에 공개한다.

제5조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그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만기일 6개월 이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명 통보가 없는 한 자동으로 2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양 기관은 협약의 증명을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대전보건대학교

(기관명)

총 장 0 0 0

대표이사 0 0 0

# 산학협력 협약서

000(기관명)와 대전보건대학교(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산학협력을 통한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에 동반성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 본 협약은 양 기관이 대전보건대학교 가족회사로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맺고 상호교류 협력하며,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협력한다.

- 가. 산·학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 도모
- 나. 기술지도 사항 및 산학협력연구 과제 모색
- 다. 현장실습, 인턴십 등 산학협력교육의 활성화
- 라. 산업체의 우수인력 확보 및 졸업생들의 취업을 위한 상호협력
- 마. 산·학의 시설 및 기자재 공동 활용
- 바. 각종 교육 실시 및 교육과정의 공동 개발, 산업체 인사 대학교육 참여
- 사. 기타 산학협력 사항

제3조 양 기관은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성실히 수행하며,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통하여 수준 높은 사업결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4조 양 기관은 산학협력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상호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외부에 공개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서면승인 하에 공개한다.

제5조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그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만기일 6개월 이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명 통보가 없는 한 자동으로 2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양 기관은 협약의 증명을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기관명)

대표이사   0   0   0

대전보건대학교

총장       0   0   0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2026.04.01.>

[별지 제5호 서식] 산학협력 체결 회의록(행정부서 및 학과)<개정 2026.04.01.>

## 산학협력 체결 회의록

<b>회의일시</b>	년 월 일 ( 시 분 ~ 시 분 )	<b>장 소</b>		
<b>대상기업</b>	1. (주)000회사 2. 00000병원	<b>담당자 :</b>		
<b>회의주제</b>	00000병원과의 산학협력 체결의 기대효과 및 타당성과 체결 계획			
<b>회의내용</b>	<input type="checkbox"/> 기대효과 1. 인사교류 대학교육 참여, 겸임교수 강사 2. 산학협력의원 위촉 3. 현장연수 협조 4. 현장실습 협조 5. 위탁교육 6. 기술공동 개발 7. 학교기업 시 대학교수 제품 시험 및 제조 의뢰 8. 산업체 정보화교육 9. 산업체 경영진단 10. 산학협력단 구성 시 실적 11.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 사업 실적  <input type="checkbox"/> 협약체결 타당성(체결 여부) 지역사회 및 학교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어 협약체결 타당(희망)  <input type="checkbox"/> 협약체결 계획 - 협약체결 예정일 :    년    월    일 - 협약체결 방식 : 서류교환 또는 협약식 또는 기타			
<b>참석자</b>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